

1994년도 총 청 복 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994. 9. 28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 199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 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규모

나. 세출예산안 규모

2 . 예산안 개요

○ 항목별 내용

3 . 검토 의견

□ 199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510,136,772	100	502,927,918	100	7,208,854	1.4
국가부담 수입	소 계	424,580,405	83	421,964,870	83.9	2,615,535	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8,891,802	66	338,139,988	67.2	751,814	0.2
	지방교육양여금	81,030,133	15.8	81,030,133	16.1	-	-
	국고지원금	4,658,469	0.9	2,794,748	0.6	1,863,721	66.7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	-	1	-	-	-
지방자치 단체회계 부담수입	소 계	57,235	-	49,653	-	7,582	15.3
	비법정 전입금	57,234	-	49,652	-	7,582	15.3
	지원금	1	-	1	-	-	-
지방자치 단체교육 비특별 회계부담 수입	소 계	85,416,650	16.7	80,830,913	16.1	4,585,737	5.7
	재산수입	13,727,276	2.7	9,598,342	1.9	4,128,934	43.0
	입학금및수업료수입	27,625,395	5.4	28,740,930	5.7	△ 1,115,535	△ 3.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324,176	0.1	343,327	0.1	△ 19,151	△ 5.6
	잡수입	5,258,666	1.0	3,667,177	0.7	1,591,489	43.4
	이월금	38,481,136	7.5	38,481,136	7.7	-	-
	지방교육채	1	-	1	-	-	-
주민부담수입	주민부담지원금	82,482	-	82,482	-	-	-

*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29억 2,791만 8천원보다 1.4%인 72억 885만 4천원이 증액된 5,101억 3,677만 2천원 규모임.

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510,136,772	100	502,927,918	100	7,208,854	1.4
교육위원회비	596,265	0.1	587,649	0.1	8,616	1.5
교육행정비	24,760,290	4.9	24,610,539	4.9	149,751	0.6
교육사업비	10,844,849	2.1	10,789,623	2.1	55,226	0.5
학교비	338,725,669	66.4	340,076,774	67.6	△ 1,351,105	△ 0.4
사학지원비	29,907,105	5.9	29,717,820	5.9	189,285	0.6
시설비	102,490,916	20.1	92,142,570	18.3	10,348,346	11.2
제지출경비	2	-	2	-	0	-
예비비	2,811,676	0.5	5,002,941	1.1	△ 2,191,265	△ 43.8

※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29억 2,791만 8천원보다 1.4%인 72억 885만 4천원이 증액된 5,101억 3,677만 2천원의 규모임.

2. 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안 내역을 세분해 보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고 국고지원금이 18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단양고 다목적교실 신축	5억원
○ 호우피해농가 자녀수업료 지원	6백만원
○ 호우피해 학교시설 복구	2억 4천 3백만원
○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지원	1천만원
○ 특별육성종목지정학교 지원	6천 4백만원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 4백만원
○ 직업 교육 확충	7억 7백만원
○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	10억 8천 6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중 비법정전입금 8백만원이 증액한 것은

○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 전입금 조정	△ 5백만원
○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1천 3백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이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금중 재산세수입금은 41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1억 1천 5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천 9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이 15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공시지가, 과세싯가 증·감 및 임대기간 변동으로 인한 조정	3천 8백만원
○ 본청 진입로 교환차액	1백만원
○ 중평공고 도로편입 보상	9천 4백만원
○ 청주 남성국 택지개발편입용지 보상 등 4건	15억 8천 9백만원
○ 충주 예성여중 도로편입 보상 등 2건	9천 5백만원
○ 청원 남성국 도로편입보상 등 2건	3천 2백만원
○ 옥천 대동분교장 잡종재산 매각 등 2건	7억 7천 4백만원
○ 영동 양강국 사택매각 등 4건	1억 5천 5백만원
○ 과산 목도중 잡종재산 매각 등 4건	13억 2천만원
○ 음성 무극중 도로편입보상 등 2건	2천 9백만원
○ 수업료 인상시기 변경으로 조정	△ 11억 1천 6백만원
○ 충북수영장 휴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조정	△ 1천 9백만원
○ 생산물 매각대 추가분	5천 4백만원
○ 기타 예금이자수입	1천 2백만원
○ 정기예금 이자수입(본청)	15억원
○ 불용품 매각대	1백만원
○ 감사지적 변상금	4백만원
○ 지체상금 및 계약위약금	1천 2백만원
○ 기타 잡수입	7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분해 보면

- 교육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9백만원이 교육위원의 일비, 여비 인상분과 기타 일반여비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음.

- 본청소관에 있어서는 1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첫째, 교육행정비는 5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8백만원
○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 1천 3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둘째, 교육사업비는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체육사업비 7천 5백만원
- 시험검정비 △ 5백만원
- 행정기관·기타 사업비 △ 3천 2백만원
-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셋째, 학교비는 34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교원 급여관리비 △ 36억 8백만원
- 학교운영비 1억 8천 7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넷째, 사학지원비는 1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사학 운영지원비 △ 4억 5천 9백만원
- 사학 교육사업 지원비 9천 1백만원
- 사학 시설 지원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음.

다섯째, 시설비는 36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학교 시설비 35억 5천 9백만원
- 기타 시설비 9천 8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3. 검토 의견

'9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029억 2,791만 8천원에 비하여 1.4%가 증가된 5,101억 3,677만 2천 원 규모로 72억 885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교부금사업과 자체수입 재원으로 재산 매각대 등 기타 수입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일부사업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고 보며 이를 투자가용재원으로 학교비와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을 기했다고 볼수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첫째, 인건비가 36억 640만원 감액 되었는데

'94년도 제1회 추경시 20억 4,345만원을 추가계상되어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이번에 감액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둘째, 시설비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비하고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급식학교 시설 확충, 현장교육 여건개선과 여학실 기자재확충, 중학교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등과 학생수영장, 강당, 학생야구연습장 등 학교간접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금회액 103억 4,834만원을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93 결산검사에서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외 부대경비에 대하여 사고이월 처리할 수 있음에도 회계년도말 3개월정도를 남겨둔 현시점에 와서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됨.

셋째, 본청 예산중 단재교육원에 학생야구연습장 지원비로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연습장 시설후 활용 방안은 (p37)

넷째, 도내 시군교육청별로 급식학교시설비 10억 8,6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추경까지 시설하는 학교수와 미시설학교에 대한 대책은

다섯째, 제천과 영동군 교육청에 휴대폰 구입비가 1백 84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도내
시군 교육청별 구입 현황은 (p37)

여섯째, 학교교육활동의 활성화와 여건개선을 위하여 시범유치원사 확보사업으로 5개
교육청에 14억 9,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까지 지역별/확보 내역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 (p68, p75, p80, p87, p111)

일곱째, 영동군 교육청 예산에 화재탐지기, 피뢰침 시설비로 330만원이 계상된 바
해당 학교와 사유는